경영대학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대학원 경영학과에서는 보다 넓고 깊은 학문연구와 발전을 추구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설립목적에 부응하여 경영학과의 합리적인 운영과 질서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본 내규의 목적이다.

제 2 조(구성)

본 대학원 경영학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전공(이하 '전공')을 두기로 한다.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금융, 생산운영, 경영정보시스템, 연금금융, 빅데이터경영

제 3 조(내규의 개정)

경영학과에 주 소속된 전임교수 1/2 이상 또는 학과운영위원회(제 5 장 참조) 위원 1/2 이상의 요청으로 본 내규에 대한 개정을 토의하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안건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제 5 장 제 7 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석사과정

제 1 조(학점취득)

1. 각 전공의 학생(이하 '전공자')은 본 학과 석사과정 교과목 중에서 전공필수 교과목(군) 중에서 12 학점을 포함하여 총 24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전공필수 교과목(군)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모든 전공자는 1 영역과 2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 중에서 각각 한 과목(3 학점)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 1 영역의 경우, 전공자가 속한 전공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영역	마케팅조사, 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경영정보연구, 소비자행동,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투자론, 연금재무, 퇴직연금경영론, 빅데이터경영 개론
2 영역	연구설계방법론, 실증연구방법론-1, 행동연구방법론-1 고급통계학, 다변량 통계분석, 계량경제학, 데이터마이닝 이론과 실제, 연구조사방법론, 경영과 의사결정

3. 2 영역과 3 영역의 교과목 개설과 운영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4. 지도교수가 추천한 타 단과대학의 통계학/조사방법론 강의(예: 경제학과의 계량경제학, 호텔경영학과의 통계학 또는 조사방법론 과목, 기타 사회과학계열 석·박사과정의 통계학/조사방법론 강의)를 수강하여 A- 이상 받았을 경우에 2 영역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5. 경영컨설팅학과에서 개설한 동일한 명칭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만약, 동일하지 않은 유사한 명칭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6. 경영학과와 경영컨설팅학과 개설과목을 공유하여 각 학과의 내규에 따라 전공필수와 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7. 2010 학년도 입학생부터, 위 2 항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추가 될 시 동일명칭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필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만약, 동일하지 않은 유사한 명칭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 2 조(수강지도 및 학점인정)

1. 동일 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 학과 졸업생은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관련 전공을 중심으로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9 학점 이상을 하위 학위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학부(under) 전공필수 교과목: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생산운영관리, 경영정보시스템, 관리회계, 경영통계학.
- 단,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 인정서에 논문지도교수, 주임교

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이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각 전공자는 학기당 9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단, 타 학부 출신자의 경우에는 선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12 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3. 각 전공자는 전공별 전공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또한 전공필수 교과목 이외에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중에서 6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전공자는 일반대학원 운영지침에 따라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3 항 등, 변경된 전공에 따라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5. 경영컨설팅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한 학생의 경우 유사 계열의 전공으로 전과시 경영컨설팅학과에서 이수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경영학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경영컨설팅학과와 경영학과의 유사계열은 아래와 같다.

	경영컨설팅학과	경영학과
	경영혁신	인사조직
	지식서비스	경영정보시스템, 빅데이터경영
전공명	정보기술	경영정보시스템, 빅데이터경영
	연금금융	재무금융, 연금금융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제 3 조(논문 발표 및 심사) 1. 학위청구용 논문(이하 '논문')의 발표는 총 1 회 이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지도교수가 2 등급(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학위청구용 논문발표에 불합격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2. 공개발표 신청은 소정양식의 공개발표 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 승인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과와 대학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는 논문 지도교수와 전공교수들의 지도하에 실시한다. 지도교수는 그 결과와 해당 학생의 논문계획서를 학과장을 통하여 대학원에 제출한다.
4. 논문 발표는 공개발표 이후에 해당 전공분야에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세미나 방식으로 실시한다. 여기에는 관련전공의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참관할 수는 있으나, 논문 심사 통과여부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전공 교수가 5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해당전공 교수가 연구년이거나 타 기관 파견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50% 이상으로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상의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5.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이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 개학기 동안 유효하다.

제 4 조(논문제출자격시험)
1. 논문제출자격시험 (이하 '전공시험')은 매 학기 1 회 실시하되 시험일시는 본학과장이 시험일 3 주전에 공고한다.
2. 전공시험은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3. 출제위원은 본 학과 강의교원 중 본 학과장이 위촉한다.
4.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본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전공종합시험은 과목당 100 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80 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6. 한국어 및 외국어시험이 요구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뒤에야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 전공종합시험의 대상이 되는 교과목은 총 3 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해당 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1 영역) 중 하나(본인 해당 트랙 필수과목 중 한 과목)
   ② 해당 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2 영역) 중 하나(A- 이상 획득시 시험 면제, 성적표 제출)

③ 해당 전공 교과목 중 하나
단, 앞의 ②및 ③에 대해 해당 전공에서 특별히 지정한 바가 없으면, 학생이 전공필수 2 영역과 기타 전공관련 교과목 중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한다.

8. 전공종합시험 응시자는 이전 학기까지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 할 수 있다.

제 5 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 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잔여 3 학점이내의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제 6 조(학위취득 연한 및 자격)

1. 석사학위 취득연한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a)~b)의 요건을 만족하는 최소 1 건 이상의 게재실적이나 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논문접수증 등)를 지도교수를 통해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게재실적'이라는 것은 출간된 논문 형태(printed publication)와 출간예정 또는 게재예정 확인서 등을 포함한다.

a)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게재되어야 한다.'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는 SCI, SCI-Expanded, SSCI, A&HCI 에 등록된 학술지가 포함된다.
b) 해당 학생이 주저자(1 저자 혹은 교신저자)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 3 장 박사과정

제 1 조(학점취득)

1. 각 전공자는 본 학과 박사 혹은 석·박사 교과목 중에서 전공필수 교과목(군) 9 학점을 포함하여 총 36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전공필수 교과목(군)과 그 운영은 석사과정 전공필수 교과목(군)과 동일하다. (제 2 장 제 1 조 2 항 및 3 항 참조).

제 2 조(수강지도 및 학점인정)

1. 일반대학원 졸업생은 본 학과 석사과정의 전공필수 교과목(군) 중에서, 동일계의 경우 6 학점 이상, 비동일계의 경우 추가이수학점 과목 12 학점 이상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특수대학원 졸업생으로 일반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 추가이수학점 12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단,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 인정서에 논문지도교수,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이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위의 추가이수과목학점은 상기 제 3 장 제 1 조(학점취득)의 36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이수 교과목은 논문지도 교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각 전공자는 학기당 12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없다. 단, 타 석사과정 출신자의 경우에는 선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15 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3. 각 전공자는 전공별 전공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또한 전공필수 교과목 이외에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중에서 12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4. 경영컨설팅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한 학생의 경우 유사 계열의 전공으로 전과시 경영컨설팅학과에서 이수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경영학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경영컨설팅학과와 경영학과의 유사계열은 아래와 같다.

	경영컨설팅학과	경영학과
전공명	경영혁신	인사조직
	지식서비스	경영정보시스템, 빅데이터경영

정보기술	경영정보시스템, 빅데이터경영
연금금융	재무금융, 연금금융
마케팅 전략	마케팅

5. 경영컨설팅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한 학생의 경우 비유사 계열의 전공으로 전과시 변경된 전공에 따라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3 조(논문 발표 및 심사)

1. 학위청구용 논문(이하 '논문')의 발표는 총 1 회 이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지도교수가 2 등급(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논문을 합격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2. 공개발표 신청은 소정양식의 공개발표 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 승인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과와 대학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박사 4 기 이후)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는 논문 지도교수와 전공교수들의 지도하에 실시한다. 지도교수는 그 결과와 해당 학생의 논문계획서를 학과장을 통하여 대학원에 제출한다.
4. 논문 발표는 박사 6 기 이후에 해당 전공분야에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세미나 방식으로 실시한다. 여기에는 관련전공의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참관할 수는 있으나, 논문 심사 통과여부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전공 교수가 5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해당전공 교수가 연구년이거나 타 기관 파견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50% 이상으로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상의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5.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이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 개학기 동안 유효하다

제 4 조(논문제출자격시험)

1. 한국어 및 외국어시험이 요구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뒤에야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전공종합시험의 교과목 구성과 그 운영은 석사과정과 동일하다(제 2 장 제 4 조 참조).

제 5 조(학위취득 연한 및 자격)

1. 박사학위 취득연한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주 전공영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연구재단 등 재지 이상에 주저자(1 저자 혹은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최소한 1 건 이상의 게재실적이 있어야 한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대한 정의는 제 2 장 제 6 조 2 항과 동일하다.
- '게재실적'에 대한 정의는 제 2 장 제 6 조 2 항과 동일하다.

제 4 장 석 · 박사통합과정

제 1 조(학점취득)

1. 각 전공자는 본 학과 박사 혹은 석·박사 교과목 중에서 전공필수 교과목(군) 15 학점을 포함하여 총 60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석·박사통합과정 전공필수 교과목(군)과 그 운영은 석사과정 전공필수 교과목(군)과 동일하다. (제 2 장 제 1 조 2 항 및 3 항 참조).

제 2 조(수강지도 및 학점인정)

1. 일반대학원 졸업생은 본 학과 석사과정의 전공필수 교과목(군) 중에서, 동일계의 경우 6 학점 이상, 비동일계의 경우 추가이수학점 과목 12 학점 이상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특수대학원 졸업생으로 일반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 추가이수학점 12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단,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 인정서에 논문지도교수,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이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위의 추가이수과목학점은 상기 제 4 장 제 1 조(학점취득)의 60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이수 교과목은 논문지도 교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각 전공자는 학기당 12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없다. 단, 타 학부 출신자의 경우에는 선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15 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3. 각 전공자는 전공별 전공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또한 전공필수 교과목 이외에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중에서 18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4. 경영컨설팅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한 학생의 경우 유사 계열의 전공으로 전과시 경영컨설팅학과에서 이수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경영학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경영컨설팅학과와 경영학과의 유사계열은 아래와 같다.

	경영컨설팅학과	경영학과
전공명	경영혁신	인사조직
	지식서비스	경영정보시스템, 빅데이터경영
	정보기술	경영정보시스템, 빅데이터경영
	연금금융	재무금융, 연금금융
	마케팅 전략	마케팅

5. 경영컨설팅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한 학생의 경우 비유사 계열의 전공으로 전과시 변경된 전공에 따라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3 조(논문 발표 및 심사)
1. 학위청구용 논문(이하 '논문')의 발표는 총 1 회 이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지도교수가 2 등급(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논문을 합격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2. 공개발표 신청은 소정양식의 공개발표 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 승인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과와 대학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는 논문 지도교수와 전공교수들의 지도하에 실시한다. 지도교수는 그 결과와 해당 학생의 논문계획서를 학과장을 통하여 대학원에 제출한다.
4. 논문 발표는 해당 전공분야에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세미나 방식으로 실시한다. 여기에는 관련전공의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참관할 수는 있으나, 논문 심사 통과여부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전공 교수가 5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해당전공 교수가 연구년이거나 타 기관 파견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50% 이상으로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상의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5.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이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 개학기 동안 유효하다.

제 4 조(논문제출자격시험)
1. 한국어 및 외국어시험이 요구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뒤에야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전공종합시험의 교과목 구성과 그 운영은 석사과정과 동일하다(제 2 장 제 4 조 참조).

제 5 조 (학위취득 연한 및 자격)
1. 박사학위 취득연한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주 전공영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연구재단 등 재지 이상에 최소한 2 건 이상의 게재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중 1 건은 반드시 주저자(1 저자 혹은 교신저자)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나머지 1 건은 공저자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대한 정의는 제 2 장 제 6 조 2 항과 동일하다.
- '게재실적'에 대한 정의는 제 2 장 제 6 조 2 항과 동일하다.

제 6 조(석·박사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1.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반대학원 내규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 5 장 학과운영위원회

제 1 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영대학일반대학원경영학과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경영대학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 대한 자율운영, 학사운영, 교수연구, 평가 및 인증관련 목표수립과 지표관리 등, 본 학과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학운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제 3 조(구성)
1. 학운위 위원은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본 내규 제 1 장 제 2 조(구성)에 명기된 전공별 대표 교수 1 명씩을 포함하여 총 6 명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약간 명의 교수를 학과장의 추천과 운영위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임명할 수 있다. 학운위 구성은 경영대학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학운위 위원장은 학과장이 되며, 학운위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3. 위원장은 행정조교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위원장 및 간사는 학운위 제반 실무와 회의록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임기 및 자격유지)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 년(선출일로부터 차기 년도 선출 전일까지)으로 하되, 2 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가운데 결원이 있을 경우, 해당 전공에서는 10 일 이내에 위원을 선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30 일 이내일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운영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학운위 회의에 불참하거나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전공에서는 임시로 다른 교수를 선발하여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절차를 대신한다.
4. 운영위원이 위임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2 회 연속으로 학운위에 불참할 경우, 위원장은 타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운영위원의 교체를 관련 전공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2 항에 따라 해당 전공에서는 다른 운영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 만약 상기 2 항에 따라 운영위원을 선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전공을 배제한 상태에서 학운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공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학운위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5 조(기능 및 역할)
1. 학운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일반적 안건을 다룬다.
① 경영학과 교과과정 및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② 신입생 및 편입생 선발, 장학, 논문지도 및 심사에 관한 일반적 규정, 심사 및 실무
③ 교수의 강의 및 연구, 교,강사 선정, 조교(TA/RA) 및 지도학생 배정에 대한 규정, 심사 및 실무
④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경영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학운위는 분쟁해결, 학생 징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논문심사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책 모색, 대학원생의 징계 사안에 대한 초기 검토, 특별입학전형 기준의 설정, 등.
- 단, 학운위가 최종적 의사결정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학운위에서는 기초적 조사와 검토만을

할 뿐이다. 학운위는 회의를 통해 적절한 상위 기구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3. (회의록) 학운위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회의록은 학운위 회의에서 토의되고 의결된 내용만을 포함하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생략한다. 회의록은 경영학과 교수의 요청 시 언제든지 회람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될 수 있다. 수정된 회의록은 회람 후 일주일 이내에 이의가 접수되지 않을 때까지 회람되어야 한다. 회의록에서 위원의 서명날인은 생략한다. 위원장은 최종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회의 소집 및 정족수)
1.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③ 경영학과 소속 전임교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정족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학운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참여)과 출석(참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학운위 경영학과 내규의 개정)
경영학과에 주소속된 전임교수 1/2 이상 또는 학운위 위원 1/2 이상의 요청으로 내규에 대한 개정을 토의하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상기 제 6 조 2 항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대학원 경영학과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반대학원 내규를 따른다.